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57 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김정재·엄태영·권영진

서범수 • 박충권 • 유영하

조지연 · 김석기 · 권영세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·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('22년 기준)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,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.

국민도 대형·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'다수로부터 (소액)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' 주는 리츠(REITs, 부동산투자회사)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, 개인 투자자가 40만명을 넘어섰고,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,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,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.

따라서,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,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 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. 또한,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한편, 한국개발연구원(KDI)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'저자본-고부채' 구조를 벗어나야하며,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함.

이에,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,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(안 제26조의4 신설 등)
 - 1)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 련함(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).
 - 2)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,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(안 제14조의8제2항, 제26조의4제5항).
 - 3)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

계로 전환할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(안 제26조의4제4항).

- 4)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·점 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(안 제26조의4제7항).
- 5)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, 해산, 청문,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(안 제42조, 제44조 제6호, 제46조제1항, 제48조제2호, 제49조의7제1항제1호, 제50조제2 호·제4호, 제51조제2호).

나.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

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를 지정하고, 각종 인가, 감독,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, 연구, 평가, 분석 및 자문 등의업무도 수행하도록 함(안 제49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8제2항 중 "2년"을 "2년(다만, 제26조의4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4(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)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"라 한다)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
- 2.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
- 3.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·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
- 4.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할수 있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용승인·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, 제29조에 따른 차입·사채발행,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에 있어서 영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

야 한다.
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 완을 명할 수 있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따른 등록"을 "따른 등록,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영업인가·등록"을 "영업인가·등록, 설립신고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영업인가, 제9조의2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"을 "영업인가 또는"으로, "받은"을 "받거나,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업인가·등록"을 "영업인가·등록 ·설립신고"로 한다.

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, 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제44조제8호 중 "등록이"를 "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용승인·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.

제46조제1항 중 "취소"를 "취소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"로 한다.

제48조제2호 중 "영업인가・등록 및 설립인가"를 "영업인가・등록, 설

립인가 및 설립신고"로 한다.

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"등록을"을 "등록,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"로 한다.

제4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9조의8(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 동산투자회사,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·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 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9조제1항, 제9조의2제1항, 제26조의3,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 항에 따른 영업인가, 등록,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지원
 - 2.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
 - 3.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업무
 - 4.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

- 5.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6.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, 평가, 분석 및 자문
- 7.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원과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,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제2호 중 "등록,"을 "등록,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,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,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제21조를"을 "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"로 한다.

제51조제2호 본문 중 "제26조의3제7항"을 "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"으로, "등록 전"을 "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14조의8(주식의 공모) ① (생 제14조의8(주식의 공모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(제12조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 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 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 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•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2년(다만, 제26조의4에 따라 설 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. 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 터 5년 이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---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4 (프로젝트 부동산투자 <신 설> 회사에 대한 특례) ① 제9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 사(이하 "프로젝트 부동산투자 회사"라 한다)는 부동산 개발사 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

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것
- 2.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

 3. 제22조의2 제1항 및 제35조
 - 에 따른 업무·사무 등의 위 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
- 4.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 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

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 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21 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 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 하여 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용승인·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 다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 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 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 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 조에 따른 현물출자, 제29조에 따른 차입·사채발행, 제22조의

제42조(영업인가 등의 취소) ① 제42조(영업인가 등의 취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 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, 제9조 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

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 무위탁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 보관의 위탁에 있어서 영업인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.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 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 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 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 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 다. ----- 따른 등록.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--

영업

인가·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<u>영업인</u>가,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

- 2. ~ 9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<u>영업인가·등</u> 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.
- 제44조(해산)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해산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 는 등록의 취소
 - 7. (생략)
 - 8.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
 - 9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

<u>인가·등록, 설립신고</u>
1
<u>영업인</u>
<u>가 또는</u>
<u>받거나, 제26조</u>
의3에 따른 등록 또는 제26조
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
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<u>영업인가·등</u>
<u>록 ·설립신고</u>
- 기 44 구 (의 기)
제44조(해산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, 등
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
7. (현행과 같음)
8
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
9

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 을 하지 못한 경우 <u><단서 신</u> <u>설></u>

제46조(해산등기의 촉탁)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촉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48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42조제1항에 따른 <u>영업인</u> <u>가·등록 및 설립인가</u>의 취소

제49조의7(업무위탁) ① 국토교통 제49조의7(업무위탁) ① -----

다만, 프로
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용
승인·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
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
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
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
<u>한다.</u>
세46조(해산등기의 촉탁) ①
취소 또는
설립신고의 취소
,
② (현행과 같음)
세48조(청문)
1. (현행과 같음)
2 <u>영업인가</u>
·등록, 설립인가 및 설립신고

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

2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

_											
_											
_											
_											
1											
					- – –						
	등	록,	제	263	조 의	139	케	따	른	특	례
	등	록	또	느	제	263	조의	의 <u>4</u>	에	띠	<u>른</u>

설립신고의 수리를 -----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49조의8(부동산투자회사 지원 센터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부동산투자회사, 자산관리 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·감독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 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 사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

관

- 2.
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제9조제1항, 제9조의2제1항, 제
 26조의3, 제26조의4 및 제40조제
 1항에 따른 영업인가, 등록, 변경
 인가 및 변경등록 지원
- 2.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
- 3.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 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 험 평가 업무
- 4.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
- 5.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6.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, 평가, 분석 및 자문
- 7.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원과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

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과은 지원세터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,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5	503	조(빝	널칙)) 디	음	각	호의	0	느
č	하 1	구에	해	당히	느는	자는	= 5년	0	하
Ç	의	징역	벽 5	E는	1 [©]	벅원	이하	의	벌
-	급	에 켜	네한	다.					

제50조(벌칙)	

- 1. (생략)
- 2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, 제9조의2에 따른 등록,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
- 3. (생략)
- 4. <u>제21조를</u>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·운용한 자
- 5. ~ 7. (생략)
- 제5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· 1의2. (생략)
 - 2. 제9조제4항,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자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
2.
등록, 제2
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, 제26
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,
3. (현행과 같음)
4.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
<u>을</u>
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1조(벌칙)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2
<u>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</u>
<u> 조의4제5항</u> 등록 또
<u>는 설립신고 전</u>
,